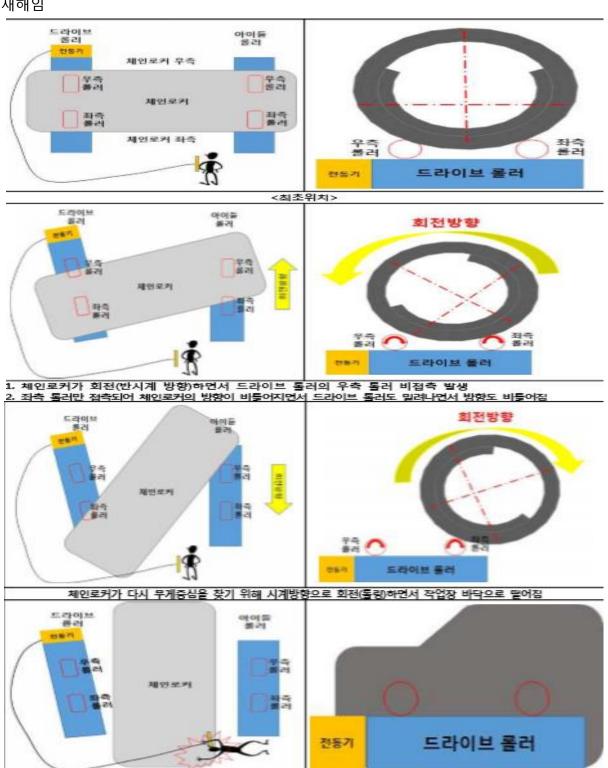
■ 재해사례

터닝롤러 작업중 체인로커에 깔림

000(주)의 용접공정에서 피재자가 터닝롤러 상부에 올려져있는 조선기자재부품 [체인로커*(Chain Locker)의 일부분]에 용접 백업 테이프를 부착하기 위해 터닝 롤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체인로커가 떨어지면서 작업장 바닥과 체인로커 사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아이들 톨러 주변에 있던 피재자와 충돌 후 깔림

재해발생 원인

○ 전도의 방지조치 미실시

- 사업주는 체인로커와 같이 무게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부재를 터닝롤러 상부에 올려놓고 과도하게 회전시키는 경우 터닝롤러의 드라이브 롤러와 아이들 롤러가 미끄러져 체인로커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나 필요한 전도방지 조치를 미실시함.

○ 중량물 취급 시 안전대책 미실시

- 터닝롤러를 사용하여 체인로커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 시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
○ 안전모 착용 미흡

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턱끈을 견고하게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하나 안전모 착용방법에 관한 관리가 미흡함.

재해예방 대책

○ 전도의 방지조치 실시

- 사업주는 체인로커와 같이 무게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부재를 회전시키는 경우 체인로커가 터닝롤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터닝롤러 사이를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고정조치를 실시하고, 터닝롤러의 본체에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 바닥에 고정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함.



< 터닝롤러 고정용 지지대 및 앵크볼트 사용(예) >

- 사업주는 체인로커와 같이 무게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부재를 회전시키는 경우 체인로커가 터닝롤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터닝롤러 사이를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고정조치를 실시하고, 터닝롤러의 본체에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 바닥에 고정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함.

○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

- 사업주는 터닝롤러를 사용하여 체인로커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.
- 또한,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.

○ 안전모 착용 철저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의 턱끈을 견고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착용지시를 하고,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견고하게 체결하여 착용토록 관리하여야 함 .

